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339 |
|----------|-------|

발의연월일 : 2018. 1. 10.

발의자 : 송기현 · 심기준 · 박정  
김민기 · 권칠승 · 박주민  
전재수 · 박재호 · 김정우  
임종성 · 신창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문시장,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는 47.9%이며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화재으로 발생함.

현행법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함.

따라서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11호, 제66조의2제3항).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 관련 안전시설물의 점검사업

제6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br>1. ~ 10. (생 략)<br><u>&lt;신 설&gt;</u>               | 제49조(기금의 사용) -----<br>-----<br>--.<br>1. ~ 10. (현행과 같음)<br><u>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 관련 안전시설물의 점검사업</u>  |
| <u>11. (생 략)</u><br>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br>① · ② (생 략)<br><u>&lt;신 설&gt;</u> | <u>12. (현행 제11호와 같음)</u><br>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br>① · ② (현행과 같음)<br><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u><br><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u> |
| <u>③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u>  |   |

|   |                          |
|---|--------------------------|
| 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br>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br>록·보존하여야 한다. | -----<br>-----<br>-----. |
|---|--------------------------|